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선수육성시스템 혁신 및 일반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권고

I. 권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구축된 기존 엘리트 선수육성 시스템의 폐단과 한계,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온 학교스포츠의 비정상성이 오늘날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공부하지 않는 학생선수’와 ‘운동하지 않는 일반학생’의 이분법을 불식하고 승리지상주의적 국가 스포츠 패러다임의 혁신적 전환을 실현하기 위하여 체육특기자제도, 학교운동부 시스템, 전국소년체육대회 등의 제도적 개혁을 강력하게 추구해야 한다. 나아가, 모든 학생들이 자유롭게 평등하며 안전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 정책 프로그램과 ‘스포츠리터러시(sport literacy)’ 교육을 적극 실행해야 한다.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는 무엇보다 근시안적 단기대응이나 파편적인 제도 시행만으로는 학교스포츠의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학교스포츠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급학교 진학 시스템 수립, 학교운동부의 투명한 운영 및 지도자 역할 재정립,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전국소년체육대회 개편 등을 포괄하는 학교스포츠 혁신을 위해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권고

• 교육부장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학생선수가 정규수업에 참여하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를 금지한다.
- 2) 최저학력에 도달하는 학생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 3)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의 대회참가, 훈련시간, 전지훈련 등에 대한 1년 계획을 학교교육계획 안에 포함케 하고 위반할 경우 학교 단위에 책임을 묻도록 한다.
- 4) 경력전환 학생선수를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5) 국가대표인 학생선수가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학생선수가 공부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 마련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6)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학기 중 대회를 주말 대회로 전환토록 한다. 회원종목단체로 하여금 2019년 말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한다. 이행계획은 2020년부터 시행하되, 이행계획을 심사하여 즉각적인 대회전환이 불가능할 경우, 2021년 말까지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 주중 대회를 여는 경우, 대회는 방과 후에 개최토록 한다.
- 7)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주말대회를 종목의 현실에 맞게 각 회원종목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2. 체육특기자의 진학에 대한 권고

- 체육특기자의 경기실적 중심의 진학시스템을 경기력, 내신 성적,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적 선발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 시행에 앞서 3년 6개월의 사전예고기간을 두기로 한다.

[고교입시]

- 시·도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시에서 체육특기자의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종합적 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체육특기자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 1)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 2) 특정 학교에 체육특기자 지원이 집중될 때 종합적 선발기준(경기 실적, 내신 성적, 실기 등)에 의해 정해진 인원을 선발하고, 그 외 학생선수들은 차순으로 배정한다.
 - 3) 내신 성적 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선발기준을 정한다.
 - 4) 공정하고 투명한 진학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학교체육진흥회를 통해서 사전 스카우트 제도 금지 등 체육특기자 진학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대학입시]

- 교육부장관은 대학 입시에서 체육특기자의 종합적인 역량을 평가하여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선발지침을 수립하고 각 대학이 준수하도록 한다.
- 5)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와 협의하여 경기실적만이 체육특기자의 대학입학 당락을 결정하는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전형요소(교과성적, 출결, 경기력, 면접 등)별 반영 비율 등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반영한다.
 -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로 하여금 체육특기자의 대학입시전형의 종목별 경기력 평가에 관한 객관적 지표를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3. 학교운동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고

- 교육부장관은 기존 학교운동부 운영에 나타난 폭력, 성폭력, 장시간 훈련, 합숙소 운영 등의 반인권적 행태를 근절하고 인권친화적 학교운동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토록 한다.
- 1) 훈련은 반드시 정규 수업 후에 실시하며, 주중 훈련 시간 및 휴식 시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 2) 주말대회 참여시, 참여일수 만큼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휴식을 보장한다.
 - 3) 학생선수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혹서기·혹한기 대회 개최 및 훈련을 최소화하고 선수보호 규정을 마련한다.
 - 4) 학교 밖 변칙적 합숙소를 포함하여 모든 합숙소는 전면 폐지하고 원거리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숙사 운영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5) 학교운동부 운영 및 대회참여와 관련하여 학부모의 비공식적 비용 각출 및 지원은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관련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조직적 비리가 밝혀지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학교운동부의 대회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토록 한다.
 - 6)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각종 불법 찬조금을 일절 받지 않는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학생선수의 진학과 관련된 절차에 어떠한 부당한 개입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하여 지도자 자격 박탈, 영구제명 등 엄중한 처벌을 가한다.
 - 7) 학교운동부 운영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를 의무화한다.
 - 8) 학교는 학교운동부 지도자 및 학생선수들이 폭력 및 성폭력 문제에 대한 민감성과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을 강화한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교육 이수 여부 및 결과를 지도자 평가에 반영한다.

9) 학교체육진흥회는 학교운동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고 각 학교는 이를 시행토록 한다.

4. 학교운동부 지도자 역할과 처우개선에 대한 권고

•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해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1)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역할을 학생선수의 운동기능 지도, 인성교육, 스포츠문화 전수자로 재설정함으로써, 운동부 활동의 교육적 기능을 복원할 수 있도록 지도 역량 배양을 위한 필수직무교육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규정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교육청, 시·도체육회 등과 협의하여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고용불안정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5. 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한 권고

•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 교육감은 협의하여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온전하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며, 공동체를 학습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1)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교운동부의 주말대회 전환시기를 연동해 스포츠클럽과 학교운동부 종목별 통합대회를 추진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교스포츠클럽대회와 학교운동부대회 통합을 위해 선수 등록제도를 개선한다.

3)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학생들이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스포츠를 함으로써 스포츠 활동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매년 학교스포츠 클럽 활동에 참가하는 학생 비율의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4)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학교스포츠클럽의 교내 리그, 시군구 지역리그가 연중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인력자원 등을 지원한다.

5)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체육진흥회를 통해 초·중·고등학생의 연령, 성별, 장애 여부 및 성장단계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리그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한다.

6) 학생의 교내리그를 포함한 스포츠 참여 및 활동과 관련한 데이터를 추적하여 학교체육진흥회 경기이력시스템에 기록하고 다양한 진로에 평가 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7) 시·도 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을 담당하는 교내 전담교사에게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수당을 현실화한다.

8)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에게 학기 중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뿐 아니라, 방학 중 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스포츠 경기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6. 전국스포츠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 포함) 운영에 관한 권고

•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국스포츠대회에서 과도한 승리지상주의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회의 성격과 형식을 전환한다.

1) 전국소년체육대회는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학생스포츠 축전으로 확대·개편한다.

2) 통합 학생스포츠축전은 중등부와 고등부가 참가한다.

3) 기존의 전국소년체육대회 초등부는 권역별 학생스포츠축전으로 전환한다.

II. 학교스포츠의 비정상성 및 혁신적 재구성의 필요성

학교스포츠는 본질적으로 '교육' 활동이다. 학생은 학교에서 자신의 요구와 능력에 맞게 다양한 스포츠를 배울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고, 건강한 경쟁 활동을 통해 스포츠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한 규칙을 바탕으로 동료와 경쟁하고 승패를 거르는 체험은 학생이 평생 누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근간이 된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학교스포츠는 이러한 교육적 의미를 상실한 채 '운동과잉 학습결핍'의 학생선수와 '학습과잉 운동결핍'의 일반학생으로 나뉘어 비정상적인 모습을 이어왔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정○○ 선수의 진학 및 학사비리 사건과 최근 큰 충격을 준 조○○ 코치의 폭력, 성폭력 사건은 학교스포츠의 비정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그동안 쌓인 비리, 불공정, 반인권, 비민주적 행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고, 체육계 적폐청산과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를 향한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학교스포츠의 비정상성은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입장과 오랜 기간 관성적으로 굳어진 구조적인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정상화를 위해 학교스포츠의 유기적인 시스템 전체를 들여다보는 긴 안목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학교스포츠의 정상화는 학생 누구나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적 환경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배우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스포츠를 찾아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문화적, 제도적 시스템이 구축될 때 가능하다. 근시안적이고 파편적 대책 시행을 넘어 학교스포츠 시스템 전반의 정상화와 혁신 노력이 요청된다.

1. 스포츠 인권침해의 구조적 원인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스포츠는 교육적 의미를 상실한 채, '운동과잉, 학습결핍'의 학생선수와 '학습과잉, 운동결핍'의 일반학생으로 이분화 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고착돼왔다. 다수의 학생선수들은 학습을 도외시킨 채 반복적으로 훈련에만 매달리는 반면, 선수가 아닌 일반 학생들은 과도한 입

시교육에 시달리며 스포츠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이 현재 한국의 학교스포츠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학교 스포츠의 양극화 현상은 국가가 엘리트스포츠 선수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했던 체육특기자 제도와 이를 지탱하는 학교운동부, 그리고 각종 국내 스포츠대회의 개최를 통해 유지·강화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학교 스포츠 현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와 학력저하, 진학과 관련한 불공정 및 비리, 경기실적을 위한 과도한 훈련과 부상, 중도탈락 학생선수들의 좌절과 소외, 반인권적 지도자의 전횡 및 폭력·성폭력 등 많은 문제를 노정해왔다. 실제로 2000년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고 싶다"며 태릉선수촌 입소를 거부했던 장희진 선수 파동과 2003년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던 천안초등학교 합숙소 화재 사건, 그리고 체육특기자제도의 병폐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2016년 정○○ 사건 등은 학교스포츠 현장에서의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실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일 뿐이다.

'스포츠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특히 빙상종목 조○○ 코치의 폭력·성폭력 사건 등 스포츠계의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직접적으로는 가해자들의 일탈에서 비롯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시기에 구축된 국가주의적·승리지상주의적 스포츠 패러다임에서 기인하는 구조적·제도적 차원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1차 권고를 통해 정부가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을 전면 혁신할 것과 함께 근본적 차원의 제도 및 정책 전환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위원회는 미투운동으로 폭로된 사건들의 가해자들 중 다수가 학교운동부 지도자이고, 피해자 다수는 사건 당시 학생선수이며 피해 장소 또한 학교운동부의 숙소 또는 훈련장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각별히 주목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드러난 사건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 다수의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가시화하기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학교운동부의 폐쇄된 집단 문화 속에서 운동이라는 외길 인생을 살아온 학생선수로서는 미래의 진로와 교육적 선택의 다양성이 배제된 상황에서 지도자의 전횡에 저항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학교스포츠 현장에서의 폭력·성폭력은 학교운동부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학교운동부에서의 훈련 및 각종 대회 참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엘리트 학생선수 육성 시스템은 상급 학교 진학을 규정하는 체육특기자제도와 맞물려 지도자의 전횡과 인권침해가 은폐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구조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 신체적·언어적 폭력, 학습권 침해 등 인권침해 실태를 온전히 개혁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그 구조적, 제도적 요인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의 수립,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수개월 간의 집중적 심의와 관계 기관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기존 엘리트 학생선수 육성시스템의 혁신 방안을 포함한 학교스포츠 정상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하고자 한다.

2. 국가주의 스포츠 패러다임과 엘리트 선수육성 시스템의 문제점

1972년에 도입된 체육특기자제도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교 및 대학까지 지속적으로 연계시켜 엘리트 선수를 육성해 내는 체계로, 국가대표 선수촌 및 국제대회 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특례 및 연금제도 등과 결합되어 지난 반세기 동안 승리 지상주의적 국가 스포츠 패러다임과 엘리트 체육 정책을 떠받치는 제도적 근간이 되어왔다. 체육특기자제도는 특히 경기실적만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신체 및 심리적으로 무리가 따를 정도로 운동에만 몰입하게 만들었다. 또한, 같은 해부터 초등학교와 중학생들이 참가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전국체육대회에서 분리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를 전후해 학교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학생선수들이 더 이상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후 대부분의 학생선수들은 기본적인 교과 수업을 포함해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기본교육이나 다양한 삶의 가치를 위한 학습, 학교 일상의 문화나 공동체를 경험할 기회 등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와 이를 위한 과도한 훈련에 시달려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 스포츠를 시작한다는 것은 운동 외의 삶을 송두리째 포기하거나 상실하고 오로지 운동에만 모든 것을 거는 각오를 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하게 되었다. 학생선수는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학교운동부에서 단절된 관계를 경험하며, 운동부 내에서 발생하는 반인권적 상황을 합리화하고 일반학생과 분리·소외된 관계를 특권으로 인식하는 한편 운동만을 자신의 유일한 진로로 여기게 된다. 스포츠 '외길' 인생에 대한 관념은 코치와 감독, 그리고

학부모 등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그러나 치열한 스포츠 영역의 경쟁과 그 과정에 수반되는 부상과 실패의 위험 등을 고려할 때 학생선수가 성공한 직업인이자 생활인으로서 성인 이후의 삶을 계속 영위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체육특기자제도는 언젠가는 이러한 본질적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학생선수와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는다. 오히려 체계적으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제도적 기제로 작용하면서 전문선수 외에 다양한 직업선택과 준비의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왔으며, 중도 탈락한 학생선수들의 사회적 진로 모색이나 경력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등에 중대한 걸림돌을 제공해왔다. 학습권 침해는 또한 인격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요청되는 비판적, 합리적 사고의 함양과 균형적 사회 인식을 가로막음으로써 학생선수들이 부당한 폭력과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나 차별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을 박탈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확신과 자기 존중, 열정, 건강과 복지, 타인과의 좋은 관계, 리더십과 팀워크 훈련, 의사소통 기술 및 정서적 지능 향상, 도전과 실패를 통한 인간적 성장, 비판과 환희의 극적 체험 등 스포츠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기여하는 교육적, 공동체적 가치마저 상실되고, 나아가 스포츠 영역 전반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기본적 사회발전의 속도와 방향에서 매우 동떨어진 분야로 인식되는 부작용이 심화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국가주의적 스포츠 패러다임의 핵심 기제로서 작용해온 엘리트 선수육성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재구성하고 학교 스포츠의 시스템과 문화를 정상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개혁 의지와 노력이 요청된다. 그동안 정부와 교육당국은 충격적인 사건이 터질 때마다 체육특기자제도와 학교운동부 운영 등과 관련된 개선책을 반복해서 발표해 왔으나 단기적인 충격요법이나 파편적인 미봉책에 머물렀으며, 그마저도 학교 현장에서 갖가지 편법과 왜곡에 의해 굴절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웠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학교스포츠 현장이 수십 년 동안 거대한 인권의 사각지대로 온존해온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시·도 교육청과 대한체육회 등 책임 있는 정부 기관 및 단체들이 이제라도 철저히 엄밀

한 진단에 기초한 정책 및 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반세기 가까이 공고하게 다져진 국가주의적 엘리트 체육 정책과 관행은 체육특기자제도를 통한 학생선수의 선발과 진학, 학교운동부의 폐쇄적 운영 및 과도한 훈련과 합숙 문화, 각종 경기대회의 개최와 지나친 순위 경쟁, 메달리스트 병역특례 및 연금제도, 그리고 체육계 안팎의 많은 이해관계 집단들이 보여온 낮은 인식과 관행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그물망처럼 얽혀있어 어느 한 영역만을 개선하는 것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학교스포츠는 본질적으로 교육 활동이라는 대원칙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각론적 대안은 근본적인 치유력이 없고 악순환의 고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문제를 재생산한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과잉 혹은 결핍: 일반학생의 스포츠 참여 기회 제약

학생선수들에게 운동의 과잉이 문제라면, 일반학생들에게는 결핍이 문제다. 유네스코(UNESCO)의 체육교육, 신체활동 및 스포츠에 관한 헌장(Charter of Physical Education, Physical Activity and Sport, 1978/ 2015)이 강조하듯이 체육교육, 신체활동 및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으로 모든 학생들이 누려야할 권리이다. 유엔(UN), 유럽연합(EU), OECD 등 국제기구와 영국, 캐나다, 미국, 독일, 핀란드 등 해외 선진국들도 아동, 청소년기에 신체활동과 스포츠를 통한 체력 증진과 건강의 향상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및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복리(well-being) 증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실행해오고 있다.

과도한 입시경쟁이 이루어지는 한국의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신체를 움직이고 자유로운 놀이와 몸의 경쟁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최근 우리 정부와 교육당국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는 10년 전부터 교육부가 주도해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또는 1학생 1스포츠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반학생들이 방과 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되었고, 지역 및 전국대회에 참여하여 스포츠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등 평생 스포츠 참여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학교스포츠클럽 시스템과 문화가 완전히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정책 개선과 자원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유감스럽게도 스포츠클럽활동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스포츠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일반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이 한정되어 있고 그나마 학생선수들의 전유물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방과 후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으로 향하는 현실에서 함께 운동할 친구가 적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학교스포츠클럽의 확대를 모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는 지도교사의 확충과 지원이다. 기존 학교스포츠클럽 성과의 상당 부분은 일부 열정 있는 체육교사의 헌신과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운동을 직접 지도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훈련과 대회 출전에 반드시 지도교사가 필요하다. 체육교사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에 관심과 경험이 있는 일반 교과 교사들도 학교스포츠클럽 지도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클럽 담당 체육교사가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경우 잘 운영되던 기존의 학교스포츠클럽이 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과중한 학교 스포츠클럽 담당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도록 보상체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교운동부 문화에 온존하는 승리지상주의가 학교스포츠클럽에서도 재연될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와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학교스포츠클럽 대항전 토너먼트에서 탈락하면 그 해의 스포츠 활동은 끝이 난다. 시즌이 끝나면 더 이상 운동을 할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 시합 중 경쟁이 과열되기도 하고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승리지상주의가 판을 치기도 한다. 실제로 지역대회에서 판정에 불만을 품은 체육교사가 심판과 다투거나 이기기 위해 시합 도중에 학생들에게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의 과도한 경쟁의 폐해를 우려해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부터 전국스포츠클럽 대회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학생들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에서 기존 학교운동부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스포츠문화(폭력, 공격성, 과잉훈련 등)가 재생산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와 같은 우려와 일부 한계를 극복하고 일반학생들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판단하며, 주요 개선과제를 검토해 정부에 권고한다.

4. 학교스포츠의 혁신적 미래: 학생과 선수의 벽 허물기

앞서 언급한 국가대표선수의 학습권 침해 문제 공론화와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참사 이래 지난 10여 년 동안 ‘공부하는 학생선수, 운동하는 일반학생’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한국의 스포츠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었고 그 부분적 성과도 인정된다. 2010년 대학스포츠의 정상화를 목표로 설립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그리고 2018년 초·중·등 학교체육 정상화를 목표로 출범한 학교체육진흥회가 대표적이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최저학력제 시행 이후 대회참가가 금지된 학생선수들의 수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최근 다소 침체 양상을 보이는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체육진흥회 출범 이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진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정한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해 지난 반세기 동안 학생과 선수를 인위적으로 구별하고 억압적으로 관리해온 낡은 관습과 단호히 결별하고 참여적이고, 인권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학교스포츠의 미래상을 만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첫째, 엘리트 선수육성 시스템을 전면 혁신,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권위주의 정부시기에 구축된 체육특기자제도와 학교운동부 시스템,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국가주의적 스포츠 패러다임의 핵심 제도적 기제들을 종합적, 입체적 관점과 전략에 기반해 혁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선수 선발 및 진학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스포츠 참여자들의 인권을 온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우수한 수준의 스포츠 인재들을 양성하는 효과적, 과학적 스포츠 교육훈련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스포츠에 능력 있는 학생들이 학교와 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강요나 폭력에 노출되지 않으며, 다양한 미래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여건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선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엘리트 선수육성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즐겁고 안전한 환경에서 모든 학생들이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들(자신확신, 타인에 대한 배려, 공정성에 대한 헌신, 공동체 기술 및 협동 역량의 향상 등)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당국은 적극적 정책 수립과 이행에 나서야 한다. 구체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의 확대와 내실화를 위한 지속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나아가 학교 및 지역사회의 스포츠 시설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노력도 요청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학생, 장애인, 성소수자,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그동안 체육교육과 스포츠 활동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아온 다양한 주체들이 모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식을 혁신해갈 필요가 있다.

학교스포츠의 정상화는 스포츠와 신체활동 참가 인구와 사회적 저변의 인프라와 문화를 대폭 확장함으로써 기존의 권위주의적 국가 스포츠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동시에 고사 위기에 처한 엘리트 스포츠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체육단체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과 혁신의 요구에 역행하기보다 적극 수용하고 함께 동참함으로써 스포츠가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활기찬 공동체의 유지에 기여하고, 특히 아동, 청소년들의 성장 과정에 교육적 가치를 증진하는 유용한 매개로 재정립되도록 실천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모든 시민은 어린 시절부터 스포츠리터러시(sport literacy)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국가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스포츠리터러시란, 몸에 대한 자기 통제력을 습득하고 일생동안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를 만나 몸으로 해석하며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미 영국,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스포츠리터러시를 학교스포츠의 최상위 목적으로 삼고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교육하고 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온전하게 향유하는 새로운 스포츠 문화를 추구해야 할 시점이다.

III.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혁신 방안

1. 학교스포츠 정상화와 학습권 보장의 중요성

학교스포츠 전반의 왜곡과 비정상성을 걷어내면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공부에 소홀해왔던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어도 일반학생과 다름없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일반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스포츠를 즐기며 원하면 언제든지 선수로서의 삶을 꿈꿀 수 있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스포츠생태계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계 일각의 반발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스포츠 정상화는 모두에게 안전하고 자유로운 스포츠 환경과 문화의 구축은 물론 엘리트 스포츠 자체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는 시급한 개혁 과제이다.

실제로 현재와 같은 학교운동부 중심의 엘리트선수 양성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초·중·고 학생선수는 63,029명으로 전체 학생의 1.2% 수준이다. 학교운동부는 초·중·고 전체학교 11,639개교 중 4,443개 운동부로 약 38%의 학교에서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다. 인구 감소 현상으로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그 가운데 운동부를 선택하는 학생의 수는 더욱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인구감소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비율(4.2%)의 약 두 배 정도 빠른 속도(9.1%)로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통계로 확인된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10년 이후에는 학교운동부의 명맥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위험이 크고, 성공한 직업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적인 가운데 학습권 및 직업선택권 등의 구조적 제약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능 있는 학생들과 현명한 학부모들의 학교운동부 참여 선택은 매우 큰 기회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실존적 선택으로 기능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학교운동부의 생존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가운데 한계상황에 도달한 기존 체제의 기둥을 붙잡고 버티기보다는 학교스포츠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와 이를 위한 혁신적 제도개혁의 길을 택할 필요가 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일반학생들의 스포츠클럽활동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나아가 두 영역 간의 유기적 연계를 가능하게 만들면 오히려 엘리트 스포츠의 새로운 동력이 창출될 것이다.

둘째, 체육특기자제도, 학교운동부 시스템,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학생선수의 학습권(교육받을 권리)을 체계적으로 박탈해온 기존 엘리트 선수육성 시스템은 헌법적, 인권적 관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습권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은 헌법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른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습권은 ① 학생선수가 비판적 사고력과 동료 시민들과의 협력이 가능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권이고, ② 직업선수와 지도자를 비롯한 스포츠 및 관련 분야(스포츠 행정, 교육, 연구, 미디어, 외교, 법률, 산업, 복지서비스 등)의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소양과 학습능력을 제공하는 권리이며, ③ 모든 학생선수가 직업선수로 성공하기 힘든 현실적 여건 속에서 다양한 직업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공부와 운동의 이분법적 인식 속에서 오직 경기대회의 승리와 국위선양 등 국가주의, 결과지상주의의 목표 아래 수십 년 간 헌법적 기본권인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박탈해온 제도적 기제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리와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도 이러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불행을 경험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는 고스란히 사회가 감당해야 할 엄청난 비용과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나아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이 곧바로 경기력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체육계 일각의 통념이나 주장은 그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1970년대 이래 국내 체육계는 오랫동안 공부와 운동을 상호배타적인 것처럼 인식해온 관행이 존재한다. 곧, 공부를 하면 운동을 못하게 되고, 운동을 하면 공부는 당연히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퇴행적 사고와 관행이 일종의 관습법처럼 굳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 대부분의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이해조차 하기 어려운 시대착오적 통념에 불과하다. 학생선수의 학습권(기본소양, 지적, 인성)과 경기력(운동능력 및 잠재력)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하기보다는

학습권과 경기력을 조화시키면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운동도 매우 중요한 공부의 일환이며, 학업 역시 운동과 학생선수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실제로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선진국들은 전국단위 학생체육대회의 교육적, 합리적 운영을 통해 적정 훈련일자 및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학생선수 학습권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며, 체계적인 우수선수 발굴 및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여 '공부하는 학생선수'의 문화 형성과 엘리트 스포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중 경력(dual career)의 개념을 도입해 운동에 재능이 있는 학생선수들이 선수생활을 하면서도 운동 이외의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다.

이처럼 현재와 같은 엘리트 선수육성 시스템의 낮은 지속가능성,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의 당위성, 그리고 공부와 운동의 병행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정책, 제도, 실천 사례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학교스포츠의 정상화와 학습권 보장은 더 이상 유보해서는 안 될 시급하고 중요한 개혁 과제라고 할 것이다. 특히, 교육권은 다른 모든 권리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 곧 '권리를 위한 권리'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며, 부모를 비롯한 기성세대와 사회는 아동,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학습과 교육은 하나의 직업적 선택을 위해 포기해도 좋은 수동적 기회비용이 아니라 자주적 생활능력을 갖춘 직업인, 사회인, 그리고 민주적 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아실현의 핵심 요소이며, 미래의 삶을 위한 적극적 투자이기도 하다. 또한, 운동과 공부의 병행은 직업적으로 성공한 스포츠인들이 더욱 큰 자부심을 갖고 다양한 방면의 사회적 리더로서 역할할 수 있게 해주는 문화적 토대가 되어줄 수 있다.

2.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주중 대회 금지 및 최저학력제 강화

국내 엘리트 선수육성 시스템의 근간인 체육특기자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학력 저하, 학교 내 이질화 현상, 대학 미진학 특기자의 사회부적응 등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해왔다. 2009년 문체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고 2013년에는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법률 제정을 계기로 체육특기자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가속화되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19 학교 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는 2021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내신 성적 반영 의무화를 명시하였고, 대입전형에도 교과 성적 및 출석 반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2020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도 체육특기자 전형요소에 학생부 교과 성적과 출석 반영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체육특기자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지속적 문제 제기와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진단과 처방은 지난 30년 간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이는 현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 개선만으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체육특기자제도의 단계적 폐지 및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학생선수의 선발과 진학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제도 설계를 포함한 근본적 수준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1) 기존 수업 결손 방지 대책 및 한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장치로서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우선 주중 대회의 금지와 최저학력제의 강력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각 회원종목 단체가 제공한 대회개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5월 기준, 학기 중 주중에 개최되는 대회는 총 233개(38%)이며, 이처럼 학기 중 개최되는 대회 및 리그와 지나치게 많은 전국대회 참가는 잦은 수업결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학생선수들의 학력저하와 학습권 침해를 야기한다. 실제로 2018년 기준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인한 결석은 평균 초등학교 5.1일, 중학생 12.7일, 고등학교 20.8일이다. 더구나 주당 훈련횟수도 초·중·고등학교 선수 모두 평균 6회로 학생선수가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학생선수의 주당 평균 훈련시간은 초등학교 22시간, 중학생 26시간 50분, 고등학교 34시간 50분으로 독일이나 미국에 비해 많은 훈련시간을 감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학생선수가 수업일수의 1/3까지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해도 결석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에 대해 현장교사들은 비판하고 있다.

학습권 보장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2018년부터 오히려 학생선수가 정규수업을 받지 않고 훈련에 참가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것이다. 이에 더하여 지각, 조퇴, 결과 1회가 결석의 1/3일로 계산되는 점을 악용해 1교시만 출석하고 조퇴하면 산술적으로 약 180일을 빠져도 대회 및 훈련 참가가 가능해진 셈이다.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행된 기존 정책들을 현장에서 단서조항이나 제도적 맹점을 파고들어 악용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주중 대회의 금지 및 과도기적 이행 조치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학기 중 주중대회의 참가 금지 조치가 강력하고 철저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스포츠 선진국에서는 주말이나 방학 중에 대회를 진행하고 정규수업이 있는 날에는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양적 훈련 시간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비과학적 훈련방식이나 학생 학습권을 고려하지 않은 대회 일정 수립의 관행을 극복하고 합리적, 과학적, 인권친화적 스포츠 훈련 및 대회 운영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시급히 제기된다.

다만, 일부 종목이나 대회 개최지의 특성 등으로 인해 당분간 주중대회 개최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고려해 2019년 말까지 주말대회로의 전환 계획을 마련하고 2020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즉각적인 주말대회 전환이 불가능한 일부 종목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사를 거쳐 2021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주중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대회는 방과 후에 개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판단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구체적인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시행 및 적용 과정에서 위원회 권고의 기본 취지와 내용이 무력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최저학력제의 실질적 적용

최저학력제는 과목별 평균에 의거해 최저성적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미달하는 학생 선수는 대회 참가 등 선수로서의 활동에 일부 제약을 부과하는 행정 조치이다. 이 제도는 학생선수 학습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2010년부터 교육부가 단계적으로 도입해 2017년부터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모든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초·중학교(5과목)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교과, 고등학교(3과목)는 국어·영어·사회 교과에서 일정한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는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학교장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대회출전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최저학력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학력에 도달하는 학생만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체육특기자로 선발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최저학력제 도입 이후 학생선수들의 최저학력 미도달 비율은 2014년 23.9%에서 2018년 14.2%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특히 중3 학생 선수의 경우 미도달률이 30%에 이르고 있어 정책적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반면, 고등학교 평균의 1/3이라는 최저학력 기준은 너무 낮아 실제 공부할 의지가 있는 학생선수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현장교사들의 비판이 제기된다. 나아가, 중·고교 학생선수의 정규수업과 관련하여 출결 사항과 학업성적이 상급학교 진학(체육특기자 선발)에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업 동기를 장려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최저학력제는 체육특기자제도로 인해 발생한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임시로 마련된 제도로서 기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독일과 일본에도 일정 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상급 학년, 상급 학교로 진급하지 못하는 제도가 있으나 이는 학생 선수에게만 적용되는 최저학력제와 달리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선수

들이 학생선수가 아닌 진정한 선수‘학생’이 되는 시점부터 현행과 같은 최저학력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 학생선수 진학 제도의 개혁: 투명·합리·공정한 선발 및 진학 체계 확립

체육특기자 전형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학생선수의 상급학교 진학 시 선발 방법과 기준을 규율하는 제도적 기제이나 수학능력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기반하지 않고 경기실적 위주의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마저도 평가 기준 및 방법이 투명하고 객관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입시와 진학을 둘러싼 각종 부조리를 야기해왔다. 이에 교육부와 관계당국이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나 개혁의 폭과 범위, 효과성 등에서 여전히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체육특기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중점 심의를 진행해왔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경기실적 중심의 체육특기자 진학시스템을 경기력, 내신 성적,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적 선발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교육부장관(대학입시) 및 시·도 교육감(고교입시)에게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각각 권고한다. 다만, 현 제도 하에서 입시와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에 앞서 3년 6개월의 사전예고기간을 두도록 한다(법적 근거: 고·등교육법 제34조의 5). 이하에서는 고교입시와 대학입시로 구분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1) 고교입시: 체육특기자 선발기준 정립 등 투명하고 공정한 진학시스템 확립

현재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을 살펴보면, 시도 규칙에 따라 입학정원의 3%로 규정된 인원을 전국 시도 대학의 성적에 근거해 우선 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육특기자 진학구조는 경기실적만이 진학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적 기준이 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학습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원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운동부에서 상급학교로 진학 시 발생하는 대표적 부작용은 ‘사전스카우트’ 형태의 진학 관행으로 진학을 앞둔 운동부와 상급학교 운동부 사이에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전스카우트’는 학교운동부 지도자들 간에

상급학교 진학 선수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일종의 불공정한 ‘거래’이다. 이는 학생선수들의 진학 공정성을 해치는 나쁜 관습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현행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은 경기입상 실적과 실기 능력 위주로 선발하고 있어 사전스카우트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원천적으로 학생선수 진학 전반에 행사되는 지도자의 부당한 개입을 견제할 수 없다. 또한,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아 학생선수의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교육부는 2021학년부터 고입체육특기자 선발 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 내신 성적 반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신 성적 반영 비율 및 최저학력 반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위원회는 고입 특기자제도 선발 전형과 관련하여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하는 등 자격 기준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특정 학교에 특기자 지원이 집중될 때 경기실적, 내신 성적, 실기 능력 등 종합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인원을 선발하고 그 외 학생선수들은 차순으로 배정하도록 한다. 특히, 내신 성적 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선발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의 실질적 학습 동기를 진작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 사례의 하나로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내신 반영 방안 연구’에 의하면, 체육특기자를 체육인재로 바라보는 ‘체육인재선발전형’이라 명명하고 내신을 교과 70% 비교과 30%로 제안하고 있는데 향후 고입입시와 관련된 내신반영 비율 적용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진학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사전스카우트 제도 금지 등 체육특기자 진학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2) 대학입시: 체육특기자 종합역량 평가에 기반한 선발 원칙 확립

대입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의 경우, 현재 지원 자격 또는 전형요소에 학생선수의 경기실적을 요구하는 전형으로 대학의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 체육특기자를 선발하고 있다. 현재,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은 실기위주 전형 유형에 속하며 2019학년도

기준, 79개 학교에서 2,167명(전체 모집인원의 0.62%)을 선발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평가 시 외부 실적보다 학생부 중심의 평가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대학 중 약 73%에 해당하는 대학은 학생부 반영비율을 30% 미만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의 합격 여부에 경기실적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반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학교단위의 운동부를 운영하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및 대학스포츠를 관리하는 기구에서 정한 규칙을 엄격히 적용해 입시절차 및 학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 표는 한국, 미국, 일본의 대입 체육특기자 전형의 특징과 차이를 보여준다.

<표 1> 한국, 미국, 일본의 대입 체육특기자 전형 비교(출처: 교육부)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대학관리	대교협	NCAA*	문부과학성
고교관리	없음	NFHS**	전국고등학교 체육연맹
전형시행	대학자율	대학자율	대학자율
기준학력	대부분 미채택	NCAA학업기준 (SAT, ACT)	고교 과과평점 3.5 미만 추천 제한
지원자격	대회입상실적	고교 필수과목 이수, GPA기준 이상	대회입상실적, 고교교과평점 3.5 이상
평가절차	서류, 실기, 면접	리쿠르팅	서류, 조사서, 논문(작문), 면접

* NCAA(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는 전미대학스포츠협회로 학생운동선수의 학업을 관리하고 대회를 주관한다.

** NFHS(The National Federation of State High School Association)는 전미고교연맹으로 고등학교 대교경기의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고 지도자 교육을 담당한다.

교육부 등은 그동안 체육특기자 전형의 자의적 운영 가능성을 제한하고, 전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실적평가 기준 미공개, 단체종목 포지션 미 구분, 개인 종목 포괄 규정 사례 등 대학입시의 공정성 시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더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새 진학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초·중·고 학생선수와 관련하여 최저학력제 시행 등 학습권 보호 정책을 시행해 온 만큼 정책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위해 대입 전형에도 학생선수들의 학업성취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대입 체육특기자 선발전형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 전형요소를 다양화해야 한다. 더불어 체육특기자 전형의 특성을 반영하는 경기력의 경우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정량평가 비율(예를 들어 50% 이상)을 늘려야 한다.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호를 강조해 온 만큼 학업성취가 실질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내신을 일정 비율(예컨대 40%) 이상 입시전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체육 특별전형의 선발원칙 중 가장 중요한 원칙은 대학 입학 후 수학적능력이다. 따라서 학교의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기준을 요구하며,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업 성적, 논술, 면접, 실기를 반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내 대입전형 역시 학생선수가 그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수학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경기력만큼이나 중요한 기준으로 입학울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협의해 각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체육특기자의 대학입시전형의 종목별 경기력 평가에 관한 객관적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의 뒷받침에 나서야 할 것이다.

4. 학교운동부 운영의 전면 혁신 및 지도자 역할 재정립

1) 학교운동부 성격과 위상의 재정립

체육특기자제도가 도입된 이후 학교운동부는 학생들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자율적, 교육적 활동 단위의 위상과 성격을 상실하고 국가주의, 승리 지상주의적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을 떠받치는 핵심적 하위 기제로 운영되어왔다. 학교운동부는 학교 안의 고립된 '섬'으로 존재하였고, 학생선수들은 마치 학생이 아닌 것처럼 인식되어 체계적인 학습권 박탈은 물론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였으며, 학교와 교육당국은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대회 입상 성적 외에 학교운동부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감독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앞서 강조한 것처럼 이와 같은 엘리트 선수육성 시스템과 학교운동부 시스템은 규범적 정당성은 물론 현실적 지속가능성의 차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이 점점 자명해지고 있다.

2020년을 목전에 둔 한국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인권친화적인 학교스포츠 시스템과 문화의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학교운동부 활동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이며, 학교운동부를 구성하는 학생선수와 지도자는 교육 단위인 학교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운동부와 관련된 모든 활동과 운영의 주체는 학교이며, 학교운동부 운영 역시 교육적 기준과 판단에 따라야 한다.

학교운동부 소속의 학생선수는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이며, 학생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이 선수로서의 그것보다 우선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운동부는 이들이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고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자기 주도성과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나아가, 학생선수는 훈련이나 대회에서 경기실적에 대한 과도한 요구나 억압적인 분위기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학교운동부 운영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2) 훈련 및 대회 참가의 원칙과 기준 확립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들은 여전히 과도한 훈련에 시달리고 있다. 2014년 한국 스포츠개발원의 한국 초·중·고 학생선수의 훈련시간 국내·외 실태조사 결과, 초, 중, 고교 학생선수 모두 주당 평균 6회의 훈련을 실시하였고, 주당 평균 훈련시간도 초등 22시간, 중등 26시간 50분, 고등 34시간 50분으로 독일이나 미국에 비해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 7일 운동하는 학생의 비율은 약 59%였으며, 1일 운동시간도 평균 4시간 44분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과도한 훈련시간은 학생선수들의 학업과 운동 병행을 물리적으로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학생선수들이 일반학생들과 친구

관계를 맺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전향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훈련은 반드시 정규수업 이후에 실시하며 주중 훈련시간 및 휴식 시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주중대회 참가와 개최를 금지하고 주말대회로 대회를 전환할 경우 평일에는 훈련으로, 주말에는 대회참가로 인해 학생선수의 휴식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며, 따라서 주말대회 참여 시 참가일 수만큼 학생선수와 지도자가 훈련을 하지 않고 휴식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선수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위해 혹서기 및 혹한기 대회 개최 및 훈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한체육회 내부지침인 '전국규모 대회 혹서기·혹한기 대회운영 관리지침'을 전면 재검토해 선수 보호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는 판단한다.

3) 합숙소 전면 폐지 실현

운동기능 향상이라는 유일한 목표 아래 학생선수들의 일상을 집단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때때로 폭력 및 성폭력이 발생하는 학교 내 공간이 합숙소이다. 이러한 공간이 학교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반교육적이며 반인권적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보호를 위해 합숙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을 밝혔지만 여전히 변칙적인 불법 합숙소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초·중 학생의 경우 기숙사까지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시·도 교육청도 있지만 2019년 3월 기준, 중학교 69개, 고등학교 300개의 기숙사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위원회는 학교 밖 변칙적 합숙소를 포함한 모든 학교운동부 합숙소의 폐지를 실현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일부 종목의 특성과 개인적 사정으로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하고 근거리 학교로의 전학 등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주거 시설과 학교 차원의 감독 절차를 갖춘 기숙사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4)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강화

학교운동부를 둘러싼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투명성 부족에 따른 부정과 비리 발생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끊이지 않는 학교운동부 비리의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 비정상적인 운동부 운영경비 조달 구조에서 비롯된다. 현재 교육부 지침은 학부모 부담의 운영경비 등을 학교회계에 편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운동부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불법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경기 참가와 진학에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지도자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고 있는 현실이다. 관계자의 담합이나 대회의 입상실적만으로 학생의 입시 당락이 결정되는 구조에서 운동부 지도자가 학부모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누리는 상황이 자주 전개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선발, 평가 지침이 포함된 학교운동부 운영규정에 대한 공통지침을 마련하고, 경비를 절감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등 학교운동부에 대한 실질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학교운동부 운영 및 대회참가와 관련 학부모의 비공식적 비용 각출 및 지원을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며, 조직적 비리가 드러나는 경우는 학교운동부의 대회참가까지도 제한하도록 하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불법 찬조금을 일절 받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도자 자격 박탈, 영구제명 등 엄중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부패 근절 및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지도자 자격 요건의 강화 및 인권교육을 포함한 지도자 교육의 강화 대책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합리적, 민주적 거버넌스를 확립함으로써 인권침해 및 부패의 발생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학교와 교육당국의 적극적 관리 감독의 책무가 크다는 점을 위원회는 강조하고자 한다.

5) 지도자 역할 재정립 및 처우 개선

위원회는 지도자에 대한 일벌백계만으로는 생계형 일탈을 막기 어려울 수 있으며, 정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역할 재정립 및 처우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운동부 지도자들이 학생선수들의 훈련지도와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업무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운동부 지도자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활동에 임하며 학교 공동체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생선수의 운동기능 향상을 넘어 선수의 전인적 인성의 발달을 돕는 교육자이자 스포츠문화의 전수자로 지도자에 대한 역할 재정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교육청과 시도체육회에 소속되어 전임코치, 순회코치 등으로 불리며, 계약 기간은 대부분 1년이다. 학교 관리자와의 관계와 담당 운동부의 경기실적이 재계약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기실적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도자 인건비는 일부 교육청의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학부모가 제공하고 있다. 위원회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급여 수준의 현실화와 실질적 고용안정 보장이 필요하며, 정부가 이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6) 소결: 안전한 학교스포츠, 공부하는 학생선수, 투명한 거버넌스

지난 수십 년간 권위주의적 국가 스포츠 패러다임의 핵심 하위 기제로 작동해온 학교운동부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관점에 기반한 위상과 역할의 재정립이 반드시 요청된다. 이를 위해 과도한 훈련과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들이 시행되어야 하며, 합숙소 전면 폐지 실현 그리고 지도자 자격요건 및 인권교육 강화 등을 통해 폭력,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위험으로부터 학생선수들을 철저히 보호하는 안전한 학교스포츠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학교운동부 운영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와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단호한 제재 조치는 물론 투명한 거버넌스 구조와 문화를 확립해

가야 한다. 이와 관련 학교와 교육당국은 학교운동부 시스템의 질적 혁신을 추구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는 판단한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은 경기실적 및 운동기능 향상을 넘어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체계적, 과학적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역할 재정립을 요구받고 있으며, 정부와 관계당국은 이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 조치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5. 모두를 위한 학교스포츠: 스포츠리터러시 교육과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스포츠와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리고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며, 민주주의와 평등, 다양성의 가치 그리고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협력과 소통 기술을 경험하고 익히는 기회를 충분히, 그리고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스포츠클럽 활동은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한 긍정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평생 스포츠를 즐기는 문화적 자본의 토대를 제공한다. 학교에서 경험하는 스포츠 활동은 다양한 문화 역량을 기르고 학생들의 일상을 활기차게 만들 수 있다. 아동, 청소년기의 학생은 충분한 놀이 및 여가 활동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흥미와 선택에 따라 다양한 문화와 스포츠 활동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7560+ 운동’ 및 ‘1인 1스포츠 활동’ 등 학생들의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각 급 학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를 통해 스포츠 활동 및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정부와 교육당국의 최근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일반 학생의 스포츠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스포츠클럽 정책 목표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다시 말해, 현 학교체육진흥법 상의 “신체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며, 학생들이 평생 운동 습관을 갖고 ‘스포츠 리터러시’를 기르며, 스포츠의 가치를 ‘향유’하고 스포츠 참여기회와 몸에 대한 ‘자기조절능력’을 기를 수 있는 수준으로 정책 목표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가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프로젝트로 학교스포츠클럽이 실행되면서 전시성 및 양적 팽창 위주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현장에서는 스포츠클럽 등록률 높이에 몰두함으로써 담당교사의 업무과중이나 참여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지 않는 대회 중심의 클럽 운영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더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교내 공간으로 제한되면서 다양한 클럽 활동을 위한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종목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학교스포츠클럽이 학생의 스포츠 활동 증가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 교육부는 2017년 현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17시간(일 년 기준)이상 등록률이 65.2%이며, 참여 학생의 47.3%가 일주일에 두 시간 정도 참여한다고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신체활동 증가를 보여주는 고무적 결과로 보이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양적기준으로 평가하려는 교육부의 의도가 투영된 장밋빛 수치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7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학생의 교내외 체육활동-학교스포츠클럽 참여 여부’문항에서 참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이는 교육부의 학교스포츠클럽 지표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추후 면밀한 실태조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학교스포츠클럽의 목표를 규칙적 운동습관을 통해 스포츠리터러시를 익히고 스포츠를 향유하는 것에 둔다면 ‘17시간’이라는 기준은 매우 불충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대회 위주로 진행되는 학교스포츠클럽의 형식도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다. 학교 대표팀이 참가해 토너먼트를 하는 대교경기의 형식보다 오히려 교내리그를 우선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대한체육회에서 토요일스포츠 강습을 위해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는 이른바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연간 약 2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교내스포츠 프로그램 활성화에 투입된다면 학교스포츠의 모습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한 학년 17시간 참여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기준이 되는 수준을 뛰어넘는 획기적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들이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해 스포츠가 그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매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 목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부가 최초 학교스포츠클럽을 도입하던 2009년 당시 스포츠클럽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생겼던 부작용들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학생부에 기록해 대입자료로 활용하고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들은 '걷기'종목을 학교스포츠클럽으로 만들어 참여 인원과 시간을 부풀리는 등 보여주기식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실태를 양산하기도 했다. 따라서 학교스포츠클럽의 참여율 확대 방안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어떤 양질의 스포츠클럽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어떤 교육적 목표를 이룰 것인가 등 정책 내실화 방안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체육진흥회를 통해 초·중고 학생의 연령, 성별, 장애 유무 및 개별 성장단계에 맞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리그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이고도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는 판단한다. 더불어, 학기 중 학교스포츠클럽 참가 뿐 아니라 방학 중 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스포츠 경기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학교스포츠클럽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위원회는 판단한다. 첫째, 각 지역의 종목단체와 학교스포츠클럽의 연계이다. 학교는 스포츠 활동을 원하는 학생과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매년 희망 인원을 등록받는다. 종목단체는 이 희망 인원에 대한 우수한 지도자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해야 한다. 이 둘이 만나는 연계정책을 펼침으로써,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다 질 높은 스포츠클럽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을 다양화하고 학교운동부와 종목 일치도를 높여야 한다. 현재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정식종목 19개 중 뉴스포츠를 제외하면 10개 내외의 종목만 학교운동부와 통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학교운동부의 주말대회 전환 시기와 연동해 스포츠클럽과 학교운동부 종목별 통합대회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둘째, 학교와 지역 내 공공스포츠클럽과의 연계이다. 학생들이 지역으로 나가고, 지역은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학생들이 학교스포츠클럽

에서 원하는 운동 종목이나 수준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지역스포츠클럽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지역의 스포츠클럽 또한 시설이 미비한 경우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학교의 시설이 지역의 공공스포츠클럽과 연계되려면 학교시설 개방 정책이 지금보다 전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영국의 위성스포츠클럽(satellite sport club)처럼, 지역 내 공공스포츠클럽이 허브 역할을 하고, 각 학교 내 시설이 위성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과 학교가 거미줄과 같은 연결망을 구성해야 한다. 프로그램과 지도자를 지역의 공공스포츠클럽이 제공하고, 학교는 시설을 제공하여 유기적인 연계성을 형성하는 방식도 시도해 볼 만하다.

6. 전국(소년)체육대회의 개편 방안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기초적인 스포츠를 보급하고, 스포츠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학교체육의 활성화, 체육인구 저변확대, 생활체육 기반 조성 및 우수 선수 조기 발굴 등 스포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매년 5월 마지막 주에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초등학교부, 중학교부로 나누어 경기가 진행되며, 36종목에 연 1만 2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대한체육회와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원되는 예산도 100억여 원에 이르는데 예산의 대부분이 경기를 치르는데 소요되는 운영비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비에 집중되어 있고 교육적인 조치를 위한 예산은 전무한 실정이다. 학생선수를 위한 교육적 지원 뿐 아니라 대회 관람을 하는 학생이나 시민들에게 어떠한 교육적 스포츠문화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시·도간 과열경쟁, 운영 부조리, 학생선수 인권 및 학습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승리지상주의에 노출시켜 부작용을 양산한다. 막대한 예산과 인원이 동원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소기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우수선수 조기 발굴에 초점을 맞추어 초·중학생 스포츠 영재들을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양성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성인스포츠의 인력

풀 확대를 위해 시·도간 과열경쟁을 부추기고 대회 입상 성적을 통해 우수선수를 가려내는 방식을 수십 년간 유지해 왔다. 결국 전국소년체전은 소수의 학생선수만 참여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측면이 강하다.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학생 선수는 2017년 기준 총 12,176명으로 전체 학생 수(2,216,909명) 대비 0.5%에 불과하다. 예선전에 참가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해도 그 비율은 전체 학생의 1.5%인 것이다.

전국 학생체육대회에 참여하는 학생선수의 규모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일본의 경우 전국중학교체육대회와 전국고등학교 종합체육대회(인터하이)에 중학교는 220만 명(63.3%), 고등학교는 120만 명의 학생이 참가한다. 따라서 학교운동부 소속의 학생선수와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일반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전국대회로 전환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존중, 공정, 인내 등 스포츠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교육적 목표가 강조된 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한편,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고등학생 선수들은 대회 시작 전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수개월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한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선수는 평소 주당 운동시간이 34시간 50분으로 선진국에 비해 많은 편인데, 전국체육대회를 참가하는 학생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훈련을 소화해야 하는 실정이다. 학생 선수의 성장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훈련으로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기도 하고, 성인으로 성장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선수생활을 마감하는 조로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는 우수선수 조기발굴이라는 전국체육대회의 본래의 목적에도 반하는 행태이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경우에도 시·도교육청 예선대회를 거쳐 대표로 선발되어 본 대회에 참가하기까지 장기간의 과도한 훈련을 받고 있으며 대회 참가 1~4주전부터 수업에 불참하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는 전국스포츠대회에서 과도한 승리지상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

클럽의 선수들이 함께 참여하는 학생스포츠축전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새로운 형태의 학생스포츠축전은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 형태의 대회를 의미한다. 학생스포츠축전은 소수의 엘리트 선수뿐만 아니라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 및 일반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7. 맺음말: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개혁 실행 방안

1970년대 체육특기자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구축된 국가주의적 스포츠 패러다임과 그 하위 기제로 운영되어온 학교스포츠 시스템과 문화를 정상화하는 것은 규범적, 현실적 측면 모두에서 미룰 수 없는 핵심적 개혁 과제이다. 그러나 학교스포츠 혁신의 시급한 필요와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정책, 제도 개혁의 완성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와 이에 따른 능동적 개혁 요구에 역행하는 국내 체육계 일각의 낡은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는 일은 끈질긴 인내와 노력을 요한다. 나아가, 스포츠 영역 안팎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지닌 상이한 관점과 이해관계를 포용적 접근을 통해 풀어내기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 무엇보다 정부 당국의 개혁 의지와 실행력이 중요하다. 정부는 2019년 1월 조○○ 코치의 성폭력 사건이 폭로된 직후 언론과 국민 앞에서 기존의 국가주의적 스포츠 정책 및 제도의 패러다임 전반의 개혁과 변화를 공식 다짐하던 순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받아들이고, 그 취지와 내용을 적극 반영한 효과적 개혁의 실행계획 및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스포츠의 정상화와 혁신적 재구성을 통해 정당성 및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처한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의 저변을 확대하고 새로운 활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요청된다. 나아가, 모든 학생들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건강한 시민, 활기찬 공동체, 역량 개발에 기반한 지속가능 복지국가(enabling welfare states)의 미래를 일구는 데 중요한 기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직업선수나 스포츠 전문가들 또한 더 큰 자부심과 전문성에 기반해 사회적 리더십을 발현할 수 있음을 적극 인식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판단에 의거,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각 부처에 I의 내용과 같이 권고한다. 정부는 국위선양을 유일한 목표로 작동해 온 기존의 국가주의적 엘리트 선수육성 시스템의 폐단과 한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등 인권 보장을 토대로 체육특기자제도, 학생운동부 시스템, 전국소년체육대회 등의 개혁 및 혁신적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스포츠 시스템과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 실행할 것을 위원회는 강력하게 권고하는 바이다.

2019년 5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 문경란

위원 김화복

위원 류태호

위원 배복주

위원 서정화

위원 서현수

위원 원민경

위원 이대택

위원 이영표

위원 이용수

위원 이용식

위원 정용철

위원 정윤수

위원 함은주

위원 홍덕기

< 권고문에 대한 이행 계획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은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선수 육성 시스템 혁신 및 일반 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주문한 스포츠 혁신위원회의 권고에 의견을 같이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스포츠혁신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가운데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관계기관 협의 및 실무 준비를 할 계획임

1.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권고

• 교육부장관은 어떤 경우든 학생선수가 정규수업에 참여하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를 금지한다.

- 권고문 이행 계획 수립(~ '19.4/4)
- 권고문 이행 계획 적용('20.1/4~)

2) 최저학력에 도달하는 학생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 권고문 이행 계획 수립(~ '19.4/4)
- 법률안 발의 중

3) 학교운동부의 대회참가, 훈련시간, 전지훈련 등에 대한 1년 계획을 학교교육 계획 안에 포함케 하고 위반할 경우 학교 단위에 책임을 묻도록 한다.

- 권고문 이행 계획 수립(~ '19.4/4)
- 권고문 이행 계획 적용('20.1/4~)

4) 경력전환 학생선수를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권고문 이행 계획 수립(~ '19.4/4)
- 학습지원 프로그램 마련(~ '20.4/4)
- 권고문 이행 계획 적용('21.상반기~)

5) 국가대표인 학생선수가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학생선수가 공부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 마련한다.

- 권고문 이행 계획 수립(~ '19.4/4)
- 학습지원 프로그램 마련(~ '20.4/4)
- 권고문 이행 계획 적용('21.상반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6)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학기 중 대회를 주말 대회로 전환토록 한다. 회원종목단체로 하여금 2019년 말까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출토록 한다. 이행계획은 2020년부터 시행하되, 이행계획을 심사하여 즉각적인 대회전환이 불가능할 경우, 2021년 말까지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 주중 대회를 여는 경우, 대회는 방과 후에 개최토록 한다.

- 주말대회 전환에 대한 이행계획 제출(회원종목단체→문화체육관광부) (~ '19.4/4)
- 주말대회 전환이 가능한 종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20.1/4~)

7)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주말대회를 종목의 현실에 맞게 각 회원종목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 주말대회 전환에 대한 이행계획 제출(회원종목단체→문화체육관광부) (~ '19.4/4)
- 재정지원 방안 마련 ('20.1/4~)
- 주말대회(일부) 재정 지원 ('21.1/4~)

2. 체육특기자의 진학에 대한 권고

- 체육특기자의 경기실적 중심의 진학시스템을 경기력, 내신 성적,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적 선발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 시행에 앞서 3년 6개월의 사전예고기간을 두기로 한다.

[고교입시]

- 시도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시에서 체육특기자의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종합적 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체육특기자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1)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 법령 및 시도 규칙 개정 검토(~ '19.4/4)
- 시도별 권고문 이행 계획 수립(~ '19.4/4)
- 시도별 권고문 이행 계획 적용(2024학년도 고입 전형~)

2) 특정 학교에 체육특기자 지원이 집중될 때 종합적 선발기준(경기 실적, 내신 성적, 실기 등)에 의해 정해진 인원을 선발하고, 그 외 학생선수들은 차순으로 배정한다.

- 법령 및 시도 규칙 개정 검토(~ '19.4/4)
- 시도별 권고문 이행 계획 수립(~ '19.4/4)
- 시도별 권고문 이행 계획 적용(2024학년도 고입 전형~)

3) 내신 성적 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선발기준을 정한다.

- 법령 및 시도 규칙 개정 검토(~ '19.4/4)
- 시도별 권고문 이행 계획 수립(~ '19.4/4)
- 시도별 권고문 이행 계획 적용(2024학년도 고입 전형, 내신반영은 2021학년도부터 적용 예정)

4) 공정하고 투명한 진학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학교체육진흥회를 통해서 사전스카웃 제도 금지 등 체육특기자 진학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 권고문 이행 계획 수립(~ '19.4/4)
- 체육특기자 진학 가이드라인 연구 진행(~ '20.4/4)
- 체육특기자 진학 가이드라인 시범 적용('21.1/4~)
- 체육특기자 진학 가이드라인 적용('22.1/4~)

[대학입시]

• 교육부장관은 대학 입시에서 체육특기자의 종합적인 역량을 평가하여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선발지침을 수립하고 각 대학이 준수하도록 한다.

5)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스포츠협의회와 협의하여 경기실적만이 체육특기자의 대학입학 당락을 결정하는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전형요소(교과성적, 출결, 경기력, 면접 등)별 반영 비율 등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반영한다.

-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가이드라인(안) 마련(~ '20.2/4)
-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가이드라인 확정(~ '20.4/4)
- 체육특기자 가이드라인 중 주요 사항 대입전형 기본사항 반영(~ '21.2/4)
- 체육특기자 진학 가이드라인 적용(2024학년도 대입 전형~)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스포츠협의회로 하여금 체육특기자의 대학입시전형의 종목별 경기력 평가에 관한 객관적 지표를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 사업계획(안) 마련(~ '19.3/4)
- 예산 지원 방안 마련(~ '19.4/4)
- 종목별 객관적 지표 개발('20.1/4~)

3. 학교운동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고

- 교육부장관은 기존 학교운동부 운영에 나타난 폭력, 성폭력, 장시간 훈련, 합숙소 운영 등의 반인권적 행태를 근절하고 인권친화적 학교운동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토록 한다.

1) 훈련은 반드시 정규 수업 후에 실시하며, 주중 훈련 시간 및 휴식 시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 권고문 이행 계획 수립(~ '19.4/4)
- 권고문 이행 계획 적용('20.1/4~)

2) 주말대회 참가시, 참가일수 만큼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휴식을 보장한다.

- 권고문 이행 계획 수립(~ '19.4/4)
- 권고문 이행 계획 적용('20.1/4~)

3) 학생선수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혹서기·혹한기 대회 개최 및 훈련을 최소화하고 선수보호 규정을 마련한다.

- 혹서기·혹한기 선수보호를 위한 대회운영규정, 훈련 최소화를 위한 이행 계획 마련(~ '19.4/4)
- 규정 등 적용('20.1/4~)

4) 학교 밖 변칙적 합숙소를 포함하여 모든 합숙소는 전면 폐지하고 원거리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숙사 운영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권고문 이행 계획 수립(~ '19.4/4)
- 권고문 이행 계획 적용('20.1/4~)

5) 학교운동부 운영 및 대회참가와 관련하여 학부모의 비공식적 비용 각출 및 지원은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관련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조직적 비리가 밝혀지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학교운동부의 대회참가를 제한하거나 금지토록 한다.

- 학교운동부의 대회참가 제한·금지 관련 근거 규정 마련 검토(학교체육진흥법 개정 등)(~ '19.4/4)
- 권고문 이행계획 수립(~ '19.4/4)
- 권고문 이행계획 적용 및 법령 개정 등 추진('20.1/4~)

6)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각종 불법 찬조금을 일절 받지 않는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학생선수의 진학과 관련된 절차에 어떠한 부당한 개입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하여 지도자 자격 박탈, 영구제명 등 엄중한 처벌을 가한다.

- 지도자 자격 박탈 등 관련 근거 규정 마련(국민체육진흥법 개정(발의중))('19~)
- 권고문 이행계획 수립(~ '19.4/4)
- 권고문 이행계획 적용('20.1/4~)

7) 학교운동부 운영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대회 참가 및 전지 훈련 비용 공개를 의무화한다.

- 권고문 이행 계획 수립(~ '19.4/4)
- 권고문 이행 계획 적용('20.1/4~)

8) 학교는 학교운동부 지도자 및 학생선수들이 폭력 및 성폭력 문제에 대한 민감성과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인권 교육을 강화한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교육 이수 여부 및 결과를 지도자 평가에 반영한다.

- 권고문 이행 계획 수립(~ '19.4/4)
- 권고문 이행 계획 적용('20.1/4~)

9) 학교체육진흥회는 학교운동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고 각 학교는 이를 시행토록 한다.

- 권고문 이행 계획 수립(~ '19.4/4)
- 권고문 이행 계획 적용('20.1/4~)

4. 학교운동부 지도자 역할과 처우개선에 대한 권고

•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해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1)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역할을 학생선수의 운동기능 지도, 인성교육, 스포츠문화 전수자로 재설정함으로써, 운동부 활동의 교육적 기능을 복원할 수 있도록 지도 역량 배양을 위한 필수직무교육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규정한다.

- 권고문 이행 계획 수립(~ '19.4/4)
- 권고문 이행 계획 적용('20.1/4~)

2)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교육청, 시도체육회 등과 협의하여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고용불안정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권고문 이행 계획 수립(~ '19.4/4)
- 관계 기관별 검토 및 협의 지속(~ '20.4/4)
- 권고문 이행 계획 적용('21.1/4~)

5. 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한 권고

•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 교육감은 협의하여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온전하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며, 공동체를 학습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1)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교운동부의 주말대회 전환 시기를 연동해 스포츠클럽과 학교운동부 종목별 통합대회를 추진한다.

- 선수등록제도 개선(~ '20.3/4)
- 가능한 종목부터 통합 추진(오픈대회 개최, 디비전 대회 등) ('21.1/4~)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교스포츠클럽과 학교운동부대회 통합을 위해 선수 등록 제도를 개선한다.

- 선수등록제도 개선(~ '20.3/4)

3)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학생들이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스포츠를 함으로써 스포츠 활동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매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가하는 학생 비율의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 권고문 이행 계획 수립(~ '19.4/4)
- 권고문 이행 계획 적용('20.1/4~)

4)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학교스포츠클럽의 교내 리그, 시군구 지역리그가 연중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인력자원 등을 지원한다.

- 권고문 이행 계획 수립(~ '19.4/4)
- 권고문 이행 계획 적용('20.1/4~)

5)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체육진흥회를 통해 초·중·고등학생의 연령 및 성장 단계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리그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한다.

- 재정 지원 방안 마련(~ '20.4/4)
- 프로그램 개발·제공('21.1/4~)

6) 학생의 교내리그를 포함한 스포츠 참여 및 활동과 관련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학교체육진흥회 경기이력시스템에 기록하고 다양한 진로에 평가 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 권고문 이행 계획 수립(~ '19.4/4)
- 진로평가 활용 방안 연구 및 경기이력시스템 구축(~ '20.4/4)
- 권고문 이행 계획 적용('21.1/4~)

7) 시도 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을 담당하는 교내 전담교사에게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수당을 현실화한다.

- 권고문 이행 계획 수립(~ '19.4/4)
- 관계 기관 협의 지속(~ '20.4/4)
- 권고문 이행 계획 적용('21.1/4~)

8)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에게 학기 중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뿐 아니라, 방학 중 스포츠크프 프로그램, 스포츠 경기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권고문 이행 계획 수립(~ '19.4/4)
- 권고문 이행 계획 적용('20.1/4~)

6. 전국스포츠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 포함) 운영에 관한 권고

-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국스포츠대회에서 과도한 승리지상주의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회의 성격과 형식을 전환한다.

1) 전국소년체육대회는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확대·개편한다.

- 통합 학생스포츠축전 개최 세부방안 마련(~ '20.2/4)
- 가능한 종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21.1/4~)

2) 통합 학생스포츠축전은 중등부와 고등부가 참가한다.

- 통합 학생스포츠축전 개최 세부방안 마련(~ '20.2/4)
- 가능한 종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21.1/4~)

3) 기존의 전국소년체육대회 초등부는 권역별 학생스포츠축전으로 전환한다.

- 통합 학생스포츠축전 개최 세부방안 마련(~ '20.2/4)
- 가능한 종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21.1/4~)